

개정 전	개정 후
<p>&lt;④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등 부동산§48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25%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현행 3년 연장</li> <li>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25%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li> </ul>
<p>&lt;⑤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방제 등 부동산·선박§49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25%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현행 3년 연장</li> <li>○ (감면율) 취득세·재산세 25%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li> </ul>

### < 개정내용 >

- (①)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감면 확대를 포함하여 3년 하되,
  - 추징조문에 '정당한 사유'를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, 신축의 경우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, 완화대상이 토지임을 명확화
- (②,④,⑤) ②한국환경공단, ④국립공원공단, ⑤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각 사업의 공익성\*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
  - \* ②환경보전정책 위탁 집행 및 환경오염 방지, ④전국 국립공원 보전, ⑤해양환경보호 및 긴급방제조치 등에 기여
- (③)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은 대형화재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유인을 위하여 감면 신설